

영등포구의회
제174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3. 4. 29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

1. 경 과

의안 제194호로 2013년 4월 1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
4월 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이 제정·시행(2010. 4. 14)됨에 따라
「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이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
관한 법률」로 제명이 변경되어 상위법령에 맞춰 조례 제명
및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
3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」를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」로 제명을
변경함.

- 조문내용 중 '친환경 상품'을 '녹색제품'으로 개정함.
(안 제1조 외 11개 조문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-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
-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타구 개정 현황 : 종로구 외 10개구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조문의 수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- 「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이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되어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고, 조문 중 '친환경 상품'을 '녹색제품'으로 정비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관 련 법 령

■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」

제11조(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)

- ①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또는 시·군·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1.4.5, 2012.2.1>
1.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 2.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·운영
 3.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